

인 천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0209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1. 2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오재홍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5.01.14. 강제경매개시결정			배당요구종기	2025. 4. 2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유정윤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	116,000,000		2022.06.02.	2022.05.13.	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: 유정윤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2.06.02.~ 2024.06.01.	116,000,000		2022.06.02.	2022.05.13.	2025.1.9.	
<비고> 유정윤: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.04.15.임 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:유정윤):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.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대차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약서가 제출됨 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1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약약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0209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4-3
제이케이루체스타지식산업센터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

11층 공장(지식산업센터)

지3층 3471.61m²

지2층 3775.38m²

지1층 3775.38m²

1층 1600.82m²

2층 2215.09m²

3층 2215.09m²

4층 2215.09m²

5층 2215.09m²

6층 1360.39m²

7층 1388.99m²

8층 1388.99m²

9층 1388.99m²

10층 1388.99m²

11층 964.19m²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8층838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20.75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4-3
대 4367.3m²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4,367.3분의 6.79

감정평가액

108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5.12.23	108,000,000	10,800,000
2회	2026.02.05	75,600,000	7,560,000
3회	2026.03.20	52,920,000	5,292,000
4회	2026.04.21	37,044,000	3,704,400

